

회칙

THE REGULATIONS OF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LDS CHOIR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LATTER-DAY SAINTS
CHOIR
CHOIR COMMITTEES

CONTENTS

제 1 장 총칙.....	3
제 2 장 회원.....	3
제 3 장 회의.....	3
제 4 장 임원.....	4
제 5 장 사업.....	5
제 6 장 재정.....	6
제 7 장 부칙.....	6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남가주 한인 LDS 합창단이라 칭한다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LDS Choir*, 약칭: *Korean LDS Choir*)

제 2 조 (목적) 본회는 단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합창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들의 영성을 강화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올림픽 와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남가주에 교회에 연락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남가주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 및 비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 한다.

제 3 장 회의

제 5 조 (기구) 본회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총회

집행 위원회

분과 위원회

제 6 조 (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임원선거

예산 결산의 승인

회칙 개정

기타 주요한 사항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년 1 회로 하며 3 월 중에 소집한다.

임시 총회는 등록 회원 10 인 이상 요청 또는 단장의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다.

총회는 등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집행 위원회)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 위원회를 둔다
집행 위원회는 단장, 후원회장, 운영 위원장, 사무 총장, 감사, 음악 책임자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의 위임 사항
정기 총회의 개최 일시
정기 발표회를 포함한 합창단 활동 계획
기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집행 위원회는 년 4 회 이상 분기별로 개최 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칙 개정) 회칙 개정은 회원 10 인 이상이 서면으로 총회에 발의 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제 9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장
후원회 회장
운영 위원장
감사
사무총장
음악 책임자

제 10 조 (자문위원) 본회에 자문 위원을 두며 당연직 자문 위원과 추대직 자문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자문 위원은 남가주에 위치한 한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감독 및
지부장으로 하며, 추대직 자문 위원은 단장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 11 조 (단장) 단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한다.

단장은 본 합창단을 대표하며, 본 합창단의 재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할수 있다.

제 12 조 (후원 회장) 후원회장은 집행 위원회에서 추대한다.

후원회장은 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후원회장은 본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 기금을 모금, 조성,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운영 위원장) 운영 위원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 수 찬성으로 선출 한다.

운영 위원장은 집행 위원회의 지시 사항을 실행하며, 합창단 운영의 전반적인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합창단의 운영과 관련 구체적인 운영 규칙은 별도의 세칙으로 마련, 총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 14 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 사항을 정기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본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수 있다.

제 15 조 (사무 총장) 사무 총장은 집행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사무 총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한다.

사무 총장은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수 있다.

제 16 조 (음악 책임자)

음악 책임자는 합창단의 음악과 관련 실무 책임자로서 합창단원 / 기악 단원을 선발 (오디션), 훈련, 선곡, 연습일정,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선정등 음악활동의 실질적인 운영에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재임 할 수 있다.

임원의 꺾임시 단장이 적임자를 위촉하며 집행 위원회와 총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

제 18 조 (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정기 발표회를 포함한, 합창단 발표를 통하여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들의 영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앙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음악을 통하여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업에 참여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제 6 장 재정

제 19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후원회를 통하여 구성하며, 후원회는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 합창단의 정기 공연 혹은 후원회 밤 공연 활동, 또는 기타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 조성한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칙

제 21 조(시행) 이 회칙은 정기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정: 2005 년 3 월 13 일

단장 : 장관진
후원 회장 : 이정현
운영 위원장 : 서춘빈
사무 총장 : 박승목